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해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지도: 김 명 호 교수>

이 광 옥

<차례>

I. 서 론	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5.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계획사업의 행정적 지시, 가족계획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지식과의 유의성 검토
1.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	
2.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 업에 대한 태도	IV. 고 찰
3.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의 행정적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V. 결 론
4.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방	영문초록 참고문헌

I. 서 론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계획사업은 보건사업의 중요한 일분야로서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하여 가장 긴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정되며 1962년 이래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전담할 요원의 확보가 급선무이고 이 요원의 자격과 전문적인 기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각, 시, 군, 구 보건소에 배치할 가족계획 지도원과 읍, 면에 배치할 가족계획 계몽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시, 군, 구 보건소 가족계획 지도원은 조산원과 간호원의 면허를 겸지한 자 또는 간호원, 조산원 면허 단독 소지자로서 만 55세 미만인자로 한다.

2. 읍, 면 가족 계획계몽원은 가족계획 지도원과 같은 자격과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소지자로서 만 40세 미만인자로 한다(보건사회부, 1970).

시, 군, 구 보건소 가족계획 지도원과 읍, 면 가족계획 계몽원이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사항은 가족계획의 계몽교육, 피임약 및 기구의 보급과 알선, 사후관리, 통계보고, 어머니

회 운영 등이며 보건사회부에서 할당하는 지역별 가족계획 실시자의 목표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김 의숙, 1969).

1971년 1월말 현재 가족계획 요원의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적으로 평균 13,800명이고 1인당 담당 여성인구는 평균 6,900명이다(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 1962년 이후 1963년까지는 시, 군, 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가족계획 요원 약 380명의 간호원 겸 조산원을 채용 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수의 요원으로서는 가족계획사업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부득이 전혀 전문적 기술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 훈련시켜 읍, 면 가족계획요원으로 임명하였다.

1970년 1월말 현재 시, 군, 구 가족계획 지도원의 필요한 정원은 898명이며 읍, 면 가족계획 계몽원의 필요한 정원은 1,473명으로 정하여졌다. 이 정원중 현재 근무중인 지도원이 780명으로 88% 충원되었고 읍, 면 계몽원은 1,384명으로 94% 충원되었다(Population Council, 1971).

이 가운데 가족계획 교육을 받지 못한 요원이 가족계획 지도원에 있어서 270명으로 35%에 달하고 있으며 읍, 면 계몽원에 있어서는 534명으로 38%에 달하고 있다(Population Council, 1971).

한국에 있어서 가족계획 요원은 가족계획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의 인사이동의 빈번, 자격분족한 가족계획요원의 채용 및 정원부족 문제 등은 농촌에서의 활동의 제약을 주게 되어 가족계획사업의 문제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김 주환, et al 1970).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설정한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가족계획 요원의 적절한 자격과 활동력의 측정 및 성과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와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가족계획 요원의 선정이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 대상자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많이 보고 되었으나 가족계획 요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해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족계획 요원의 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금후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 더 나아가서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
2.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태도.
3.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행정적 지시사항의 이해도.
4. 가족계획 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
5.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계획사업의 행정적 지시, 가족계획 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지식과의 유의성 검토.

II. 연구 방법

자료는 경기도 보건과에서 1970년 10월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에게 실시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정의는 1970년 10월 현재 경기도 3개 시와 19개 군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소 지도원 97명과 읍, 면 계몽원 195명으로 정하였다.

조사수의 결정은 모집단 전수 조사로 정하고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가능한 요원은 보건

소 지도원 75명(86%)과 읍, 면 계몽원 168명(88%)이었다.

조사표는 사전에 예비검사를 통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부록참조)로서 질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가족계획 업무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과 가족계획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족계획 방법(현재 가장 많이 권장, 실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사항,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 지시사항으로 한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진위형, 선택형 및 삼입형으로 구조화하였다.

현지 조사는 집합조사로서 각 시, 군별로 지정된 장소에 해당 가족계획 요원을 집합시킨 후 2명의 조사자의 감독하에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

가. 요원의 현황.

경기도에서 1970년 10월 현재 가족계획 요원의 근무현황을 보면 시, 군, 구 보건소 지도원은 97명 정원에 대하여 87명(90%)이 근무중이었고 읍, 면 계몽원은 195명 정원에 대하여 191명(98%)이 근무중으로 결원은 불과 4.8%밖에 되지 않았다.

현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을 직명별로 분류하여 보면 시, 군, 구 보건소 지도원이 31.3%, 읍, 면 계몽원이 68.7% 차지하고 있었다.

2. 요원의 사회 경제적 특성

가. 연 령

가족계획 요원의 연령별 분포는 20~24세 연령층이 증양치로서 가장 많았고(36.2%), 25세 이상은 5세 간격의 연령군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성비율이 낮아졌다.

20~29세의 20대 여성이 전 가족계획 요원의 63%를 차지하여 평균연령이 낮음(27.9세)을 보였다.

보건소 지도원의 경우 24세 이하의 연령층은 20%에 지나지 않았으나 읍, 면 계몽원의 경우 약 50%로서 읍, 면 계몽원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소 지도원의 평균연령은 32.5세이었고, 읍, 면 계몽원의 평균연령은 26.3세로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나. 자 격

가족계획 요원의 자격은 임명 규정에 면허 소지자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7%의 요원이 무자격자로 근무중이었다.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는 16%의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읍, 면 계몽원은 무려 61%에 달하고 있었다.

유자격자 중에도 간호원 또는 조산원의 면허 소지자는 16.4%이었고, 그 가운데 읍, 면 계몽원은 오직 1명만이 간호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가족계획 교육 및 종사기간

가족계획 요원으로 근무중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요원은 59%(보건소 지도원 77%, 읍, 면 계몽원 51%)였고 근무기간중 한번도 가족계획 교육을 받지 못한 요원은 41%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요원 1인당 평균 가족계획사업 종사기간 2.4년간(표 1)에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받은 평균횟수는 0.9회이며(표 2)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평균기간은 1.8주(표 3)였다.

<표 1>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종사기간

경기도, 1970

기 간	보건소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1년	16.0	55.4	43.2
1~2.9	29.4	27.9	28.4
3~4.9	10.7	4.2	6.2
5~6.9	34.6	10.2	17.7
7+	9.3	1.2	3.7
무응답	—	1.2	0.8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 (명)	75	168	243

<표 3>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교육 수료기간

경기도, 1970

기 간	보건소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무	22.7	48.8	40.7
1주	22.7	24.4	23.8
2	18.7	10.1	12.7
3	14.7	3.6	7.0
4	6.7	4.8	5.3
5+	13.3	7.7	9.4
무응답	1.3	0.6	0.8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 (명)	75	168	243

<표 2>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교육수료횟수

경기도, 1970

횟 수	보건소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무	22.7	48.8	40.7
1	45.3	30.4	35.0
2	16.0	11.9	13.2
3+	15.9	8.4	10.7
무응답	—	0.6	0.4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 (명)	75	168	243

<표 4> 가족계획 요원의
현직종사기간별 분포

경기도, 1970

기 간	보건소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1년	29.3	59.5	50.1
1~2.9	33.4	27.9	29.6
3~4.9	8.0	2.4	4.2
5~6.9	21.3	7.8	11.9
7+	8.0	1.2	3.4
무응답	—	1.2	0.8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 (명)	75	168	243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현직에 종사한 기간은 1년 이하 근무한 요원이 전 조사 요원의 50%였고 특히 읍, 면 계몽원에 있어서 평균 6개월간 근무한 요원이 60%에 달하였다. 반면에 3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가족계획 요원으로 근무한 자는 불과 20%뿐이었다(표 4).

라. 출신도 및 전직유무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출신도를 살펴보면 68%가 경기도에서 출생하였다.

가족계획 요원의 전직유무상태를 살펴보면 49%의 요원이 가족계획 요원으로 처음 직업을 택하였고 전직경험이 있는 요원의 주요직업은 대부분 간호원 자격소유자의 보건 의료직 종사자였다.

마. 거주상황

가족계획 요원의 직무환경으로서 거주상황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요원이 196명으로서 전체 조사요원의 81%였고 근무처 지방에 하숙을 하는 요원은 불과 7%이었다.

바. 수입상황

가족계획 요원의 주요 경제적 특성으로 수입현황을 보면 보건소 지도원중 월 13,000원으로부터 14,000원까지 받는 요원은 83%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읍, 면 계몽원은 12,000원으로부터 1,3000원까지 받는 요원이 66%이었고 10,000원 이하의 보수로 근무하는 요원도 7%나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평균 월수입은 11,856원이었고 직명별로 구분하여 보면 보건소 지도원의 평균 월수입은 13,073원이었고 읍, 면 계몽원은 10,664원이었다(표 5).

<표 5> 가족계획 요원의 월수입 현황

경기도, 1970			
월 수 입	보건소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10,000원	—	6.6	4.5
10,000~11,000	2.7	11.9	9.1
11,000~12,000	1.3	7.7	5.8
12,000~13,000	8.0	66.1	48.1
13,000~14,000	82.7	6.6	30.1
14,000~15,000	1.3	0.6	0.8
15,000+	4.0	0.6	1.6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명)	75	168	243
평균액수	13,073원	10,664원	11,856원

정규봉급 이외에 가족계획 요원의 현지 출장을 위한 월 출장비는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는 1,500원에서부터 3,500원이었고, 그 중 79%는 2,000원에서 3,00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읍, 면 계몽원은 월 최저 500원에서부터 3,000원이었고 그 중 63%가 1,000원에서 2,00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2.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업무에 대한 태도

가. 취업동기

가족계획 사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생활을 위한 직업으로 택한 요원이 35%로 가장 높았다. 직명별로 보면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는 배운 학문과 관련이 있어서 가족계획 요원이 되었다는 요원이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읍, 면 계몽원 중에는 직업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가족계획 요원이 되었다는 요원이 무려 26%에 달하였다.

나. 현직에 대한 의견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현직장의 만족 여부는 「만족스럽다」로 여기는 요원이 전 조사요원의 49%에 불과하고 31%에 해당하는 요원이 「불만족스럽다」로 표시하였으며 「무응답」이 20%로 나타났다.

현직에 「만족스럽다」로 나타난 만족의 이유로는 “국가정책에 봉사하며 현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으로 내세운 요원이 27%로 가장 많았다(표 6).

한편 「불만족스럽다」는 요원의 주요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은 반면 보수가 적다”가 58%로 높은 율로 나타내고 있었다(표 7).

<표 6> 가족계획 요원의 현직에 만족한 이유

경기도, 1970			
만 주 이 유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국가정책에 봉사하며 현 사회에 꼭 필요하다	33.3	29.0	30.5
배운 학문과 관련이 있다	5.3	13.7	11.1
직업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2.7	4.8	4.1
성숙한 인격을 기르기 위하여	6.7	5.4	6.2
직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5.3	3.6	4.1
직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4.0	3.0	3.3
경우에 따라	2.7	0.6	1.2
호응을 잘 해 주므로	2.7	0.6	1.2
기타 (이유 기입치 않음)	13.3	20.2	18.1
무응답	22.7	19.0	20.2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명)	75	168	243

<표 7> 가족계획 요원의 현직의 불만족한 이유

경기도, 1970			
불 만 족 이 유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만 족 하 다	44.0	51.8	49.3
업무량 과다에 비해	29.3	12.5	17.7
보수 가 적 다	—	3.6	2.5
임 시 직 이 기 때 문	2.7	4.8	4.1
목 표 량 치 중	—	1.8	1.2
면 민 의 이 해 부 족	—	1.8	1.2
적 성 에 맞 지 않 음	—	1.8	1.2
기 타 (이유 기입치 않음)	1.3	4.8	3.7
무 응 답	22.7	19.0	20.2
계	100.0	100.0	100.0
응답. 수(명)	75	168	243

이와같이 가족계획 요원의 직업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요원의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를 그대로 밝혔으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요원의 만족 이유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다.

다. 현직의 지속성

“현직책을 앞으로 얼마간 더 지속하겠느냐”의 현직 지속성에 대한 의견은 평균 4.7년 정도 더 계속하여 근무하겠다고 하였다. 직명별로 보면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 평균 6.3년, 읍, 면 계몽원 4.0년 계속 근무할 뜻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는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원이 59%에 달하였으나 반대로 읍, 면 계몽원은 2년 이하 지속하겠다는 요원이 32%로서 단기간 근무할 의사를 보였다.

라. 애로사항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중 느꼈던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한 요원이 전체의 67%로 대부분이며 없었다고 한 요원이 불과 18%였다(표 8).

<표 8>

가족계획 요원의 애로사항

경기도, 1970

애 로 사 항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무	20.0	16.7	17.7
부 작 용 메 문	6.7	16.7	13.6
인 식 부 족	10.7	11.3	11.1
권 장 하 기 힘 들 다	5.3	11.9	9.9
목 표 량 문 제	2.7	5.4	4.5
교 통 불 편	5.3	11.3	9.7
여 비 부 족	4.0	2.4	2.9
요 원 의 지 식 부 족	1.3	1.2	1.2
기타(이유 기입치 않음)	16.0	13.7	14.4
무 응 답	28.0	9.5	15.2
계	100.0	100.0	100.0
응답자수(명)	75	168	243

3.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시사항의 이해도

가. 피임약제, 피임기구의 취급 및 대상자 관리

가족계획사업 실천요강(보건사회부, 1971)에 의하면 가족계획 요원의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피임기구 및 약제취급과 대상자 관리이다. 따라서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피임기구 및 약제취급과 대상자 파악 및 이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이해하는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피임기구 공급의 행정적 규정중 「콘돔공급에 대하여는 1인당 월 공급량」을 이해하고 있는 가족계획 요원은 불과 16%인 38명이었고 84%의 대부분의 요원이 공급기준량을 모르고 있었다.

「콘돔공급의 횟수」에 대하여 1회 몇 개월분을 공급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있는 요원이 78%이었다. 이를 직명별로 보면 보건소 지도원은 67%에 비하여 읍, 면 계몽원은 83%나 알고 있어 읍, 면 계몽원이 보건소 지도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였다.

「콘돔 재고량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은 보건소 지도원중 71% 정도 알고 있었다.

「먹는 피임약의 관리에 있어 1인당 월 공급 기준량」의 규정을 알고 있는 요원이 전 조사수의 89%이었고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 95%, 읍, 면 계몽원은 87%로 대체로 알고 있었다(표 9).

「먹는 피임제 무료공급 대상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은 70%가 이해하고 있었고 「먹는 피

<표 9> 가족계획 요원의 피임약제 및 기구공급 기준의 정답률

공 급 기 준 량	경기도, 1970			
	보 건 소 지 도 원		읍, 면 계 목 원	
	큰 뎌(%)	경구피임제(%)	큰 뎌(%)	경구피임제(%)
1 인 당 기 준 량	18.6	94.6	14.2	86.9
1 회 당 기 준 량	66.6	—	83.3	—
저축량(보건소지도원 해당)	70.6	—	(비해당)	—
응 답 자 수(명)	75		168	

임제의 보급 수수료의 세입은 도세입으로 한다]는 규정도 88%에 해당하는 요원이 이해하고 있었다.

「루우프 시술은 연령의 하위층부터 시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68%가 이해하고 있었으며 직명별로 구분하여 보면 보건소 지도원은 80% 이해하고 있었으나 가족계획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는 읍, 면 계몽원들은 63%에 해당하는 요원만이 알고 있었다.

「루우프 시술후 부작용 환자에 대하여 사후처치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시술 대상자 우선순위의 이해와는 달리 보건소 지도원은 67%, 읍, 면 계몽원은 56%만이 알고 있었고 「루우프 시술후 부작용 환자의 진료기관의 선정」에 대한 규정은 보건소 지도원 70%, 읍, 면 계몽원이 50%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과목 표방허가 소지자는 시술의사 지정훈련을 이수치 않아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규정도 보건소 지도원은 54%만이 알고 있었고 읍, 면 계몽원은 45%만이 알고 있었다. 「루우프 지정의료기관의 관할 구역은 의료기관의 관할 읍, 면, 동을 지정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은 96% 이상의 요원이 이해하고 있었다.

「남자 불임수술(Vasectomy)을 한 후 1인당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도 보건소 지도원이나 읍, 면 계몽원 각각 98%, 90%로서 거의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경기도 가족계획사업 목표량을 지시하고 이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함에도 본 조사당시(1970년 10월말 현재) 「정관·루우프 및 먹는 피임제의 목표량과 실적 달성량」을 알고 있는 요원이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 89%, 읍, 면 계몽원에 있어 68%로 나타났다.

4.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

가.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

가족계획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적절한 피임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계획 요원 활동 중에서 또한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요원은 권유하려고 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가족계획 요원의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를 조사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족계획 요원의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았다.

「임신의 생리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가족계획 요원은 전 조사요원의 67%(보건소 지도원 75%, 읍, 면 계몽원 64%)임에도 불구하고 「루우프 형태와 크기」를 아는 요원은 보건소 지도원이 52%읍, 면 계몽원이 57%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루우프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유」도 보건소 지도원 52%, 읍, 면 계몽원은 이보다 좀 높은 비율인 70% 정도 알고 있었다. 다만 「루우프 삽입후 자궁내에서의 수축운동의 가능성」은 보건소 지도원 63%, 읍, 면

계몽원에 있어 72%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루우프의 피임 작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이며 보건소 지도원이 읍, 면 계몽원 보다 더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표시되었다(표 10).

루우프 삽입시기에 대하여는 대체로 보건소 지도원이나 읍, 면 계몽원간에 큰 차이 없이 알고 있었다.

「루우프 삽입의 안전하고도 용이한 시기」를 아는 요원이 보건소 지도원은 75%, 읍, 면 계몽원 78%로서 나타나 있었으며 「정상분만 이후나 유산이후에 루우프 삽입시기」는 비교적 다수가 알고 있었으나 조산후나 출혈이 있을 때 루우프 삽입의 시기와 가능성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다(표 11).

루우프 삽입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증류나 가능성 여부는 비교적 대다수의 요원이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루우프 삽입이 생리적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보다 좀 적은 요원이 정확한 답을 주었다.

루우프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증상에서 루우프를 제거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것은 보건소 지도원이나 읍, 면 계몽원 공히 45%의 요원만이 알고 있었다(표 12).

<표 10> 가족계획 요원의 루우프 본질에 대한 정답률

형 태 와 본 질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루우프의 크기와 형태	52.0	57.1	55.6
루우프를 프라스 틱으로 만든 이유	52.0	70.2	64.6
루우프를 삽입후 자궁내에서 운 동성	62.6	72.0	67.3
응답. 수(명)	75	168	243

<표 11> 가족계획 요원의 루우프 삽입시기에 대한 정답률

삽입시기에 대한 지식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루우프 삽입의 안전한 시기	74.6	77.9	77.0
분만 이후 루우프 삽입 시기	76.0	64.2	68.1
유산이후 루우프 삽입 시기	66.6	72.0	70.4
조산 후 루우프 삽입 시기	58.6	64.8	63.0
루우프 삽입후 3년마다 재삽입의 필요성 여부	89.3	84.5	86.0
출혈이 약간 비정상적일 때 루우프 삽입 가능성	34.6	47.6	43.6
응답자수(명)	75	168	243

<표 12> 가족계획 요원의 루우프삽입 부작용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

부작용에 대한 지식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루우프 삽입후의 실패	92.0	88.6	89.7
루우프 삽입시의 복통과 출혈 가능성	98.6	97.6	97.9
루우프 삽입후의 월경 주기 변경	72.0	75.0	74.1
루우프삽입에 의한 자궁의 임신 가능성	90.6	89.8	90.7
루우프 삽입시 임신되었을 때 태아의 미치는 영향	86.6	89.2	88.5
루우프 삽입후의 부작용과 루우프 제거의 시기	45.3	45.2	45.3
응답자수(명)	75	168	243

「경구 피임제의 성분」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도원의 33%에 해당하는 요원만이 알고 있었고 읍, 면 계몽원은 30%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구 피임제의 피임작용」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도원이나 읍, 면 계몽원의 거의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표 13).

「경구 피임제의 복용시기도」 읍, 면 계몽원에 있어서 96%가 잘 알고 있었고 다만 「인공유산 이후에 경구 피임제의 안전한 투약시기」에 대한 지식은 63%의 요원만이 알고 있었다.

「경구 피임제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루우프의 경우와 같이 대체로 부작용의 종류와 유발가능성에 대하여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표 14).

다만 「경구 피임제가 식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임신중 태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표 13> 가족계획 요원의 경구 피임제 심격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

경 구 피 임 제 성 격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경구 피임제 성분	40.0	30.3	33.3
경구 피임제 피임작용	94.6	91.6	92.6
경구 피임제 장기보관에 의한 변질 가능성	74.6	85.1	81.9
응답자 수 (명)	75	168	243

<표 14> 가족계획 요원의 경구 피임제 복용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정답률

부 작 용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경구 피임제의 식욕에 대한 영향	22.6	20.2	21.0
" 질병 유발 가능성	82.6	89.2	87.2
" 월경 주기에 대한 영향	93.3	91.0	91.8
" 임신중 태아에 대한 영향	56.0	51.1	52.7
" 장기 복용의 부작용 유발	94.6	89.2	90.9
" 이중 복용에 대한 부작용	94.6	83.3	86.8
" 월경 불규칙의 가능성	80.0	83.9	82.7
" 피부색 변화에 미치는 영향(기미)	98.6	95.8	96.7
" 출혈이 있을시 복용 계속성	18.6	17.2	17.7
응답자 수 (명)	75	168	243

알고 있는 요원이 적었다.

루우프의 경우와 같이 「부작용의 유발 가능성」이라든가 「부작용 종류」에 대하여는 널리 알고 있으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시 경구 피임제 복용 지속성의 결정」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보건소 지도원에 있어서 19%, 읍, 면 계몽원은 17%가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남자의 불임수술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를 살펴 보면 「정관절제 수술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요원이 보건소 지도원은 29%, 읍, 면 계몽원이 39%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정관절제후 임신의 공포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정횟수」에 대하여 전 요원의 92%가 알고 있었다. 또한 「정관절제 수술후 사정하는데 어떤 변화가 오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 요원의 97%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1회 배출되는 정자의 수」에 대한 지식과 「정관절제 수술후 정자없는 정액을 배출한다」는 지식에 대하여 각각 97%와 82%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표 15).

<표 15> 가족계획 요원의 정관절제에 대한 정답률

정 관 절 제	경기도, 1970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계 (%)
정관절제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29.3	38.6	35.8
정관수술후 임신의 공포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정 횟수	97.3	89.2	91.8
정관절제후 변화 여부	98.6	95.8	96.7
1회 배출되는 정자 수	100.0	95.8	97.1
정관절제후 정자없는 정액 배출	86.6	79.7	81.9
응답자 수 (명)	75	168	243

나.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

가족계획 요원이 그 활동지역의 인구분석학적 제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함은 가족계획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나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요원의 자기 담당 지역의 인구분석학적 사항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나라의 인구」에 대하여 보건소 지도원의 경우 73%가 알고 있었고 읍, 면 계몽원은 불과 50%만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1971년도 인구 자연증가율」은 보건소 지도원이 79%, 읍, 면 계몽원이 64% 이해하고 있었다.

자기 「담당지역의 인구수」 역시 보건소 지도원은 98%, 읍, 면 계몽원은 67% 알고 있었으나 「담당지역의 가구수, 가임 여자수 및 유배우 가임자수는 대체로 모르고 있었다(표 16).

더우기 자기 담당지역내의 인구증가율이나 일반 출생율에 대한 개념은 87%의 요원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족계획 요원의 인구 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정답율

특 성	경기도, 1970		계(%)
	보건소 지도원 (%)	읍, 면 계몽원 (%)	
우리 나라의 인구	73.3	50.0	57.2
경기도의 인구	64.0	60.1	61.3
담당시 또는 군의 인구	89.3 (비해당)		
담당읍 또는 면의 인구 (비해당)		66.6	
담당지역의 가구수	53.3	39.2	43.6
" 가임 여자수	37.3	25.5	29.2
" 유배우 가임 부인수	20.0	14.8	16.5
" 출생율	13.3	13.0	13.2
정부의 71년도 자연증가율 목표	78.6	63.6	68.7
응답자수(명)	75	168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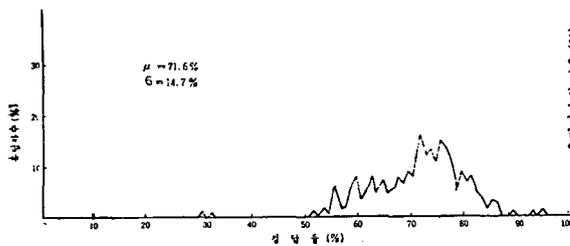
5.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계획사업 수행의 필요한 행정적 지시, 가족계획 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지식과의 유의성 검토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상 필요한 활동규정, 피임방법의 지식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바 가족계획 요원의 평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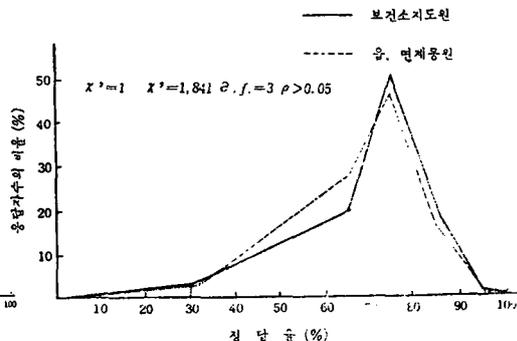
조사된 요원 전체의 정답율은 평균 71.6%였고, 표준편차는 14.7%였다(도 1).

정답율 60% 이하의 요원은 9.5%였고, 70% 이하는 35%에 달하였다. 반면 80% 이상 정답율을 알고 있는 요원은 불과 18%에 지나지 않았다(표 17).

보건소 지도원과 읍, 면 계몽원으로 구분하여 정답율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소 지도원의 1인당 평균 정답율은 73.6%였고 읍, 면 계몽원은 72.0%(표 18)로서 두 요원간의 평균 정답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답율별 보건소 지도원 및 읍, 면 계몽원의 분포의 모양도 차이(p>0.05)를 보여주지 않았다(도 2).



도 1 가족계획 요원의 정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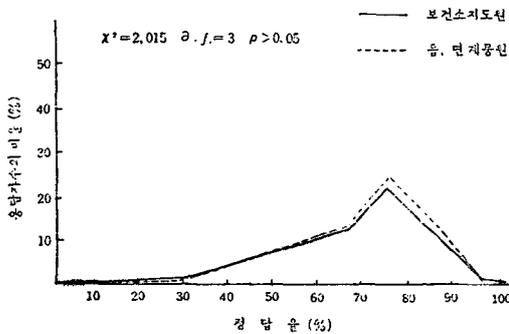
도 2 가족계획 요원의 직명별 정답율 분포

<표 17>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사업 수행에 대한 지식의 정답율

경기도, 1970

정답율 (%)	가족계획요원		cum (%)
	실수	(%)	
-60	23	9.5	9.5
60~69	61	25.1	34.6
70~79	115	47.3	81.9
80~89	41	16.9	98.8
90+	3	1.2	100.0
계	243	100.0	



도 3 가족계획 요원의 면허별 정답율

<표 18> 가족계획 요원의 직명별 정답율

경기도, 1970

정답율	보건소 지도원 (%)	읍, 면계동원 (%)
-60	9.3	9.5
60~69	20.0	27.4
70~79	49.3	46.4
80~89	17.3	16.7
90+	4.1	—
계	100.0	100.0
응답자수(명)	75	168
평균	73.66%	72.02%

$x^2=1.841$ $d.f.=3$ $p>0.05$

가족계획 요원의 면허 유무별 정답율 분포에서도 면허 소지한 가족계획 요원이나 무면허 가족계획 요원 사이에 정답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p>0.05$)을 나타냈다(도 3).

가족계획 요원의 연령별에 의한 분류에서도 29세 이하의 요원의 정답율과 30세 이상의 요원의 정답율은 유의한 차이($p>0.05$)가 없었다(표 19).

그러나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종사 기간으로 비교하여 보면(표 20) 종사기간이

<표 19>

가족계획 요원의 연령별 정답율

경기도, 1970

연령	정답율(%)					
	-60 (%)	60~69 (%)	70~79 (%)	80~89 (%)	90+ (%)	계 (%)
-20세	1.2	1.2	1.7	—	—	4.1
20~24	4.1	9.1	15.6	7.4	—	36.2
25~29	1.7	4.9	15.6	3.7	0.4	26.3
30~34	0.4	2.9	8.2	1.2	0.4	13.2
35~39	—	4.5	2.9	2.9	—	10.3
40+	1.7	2.5	3.3	1.7	0.4	9.5
무응답	0.4	—	—	—	—	0.4
계	9.5	25.1	47.3	16.9	1.2	100.0
응답자수(명)						243

$x^2=2.720$ $d.f.=3$ $p>0.05$

짧은 층과 오래된 층에 있어서 정답율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표 21).

또한 가족계획 요원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요원과 수료하지 않은 요원 사이에도 정답율의 차이가 있음($p<0.05$)을 보였다. 즉 가족계획 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한 요원의 정답율은 수료하지 않은 요원의 정답율보다 높음을 보였다(도 4).

가족계획 교육을 수료한 요원중 수료기간에 따른 정답율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p>0.05$)가 없었다(표 21).

<표 20>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종사기간별 정답율

		정답율(%)					계(%)
기간		-60 (%)	60~69 (%)	70~79 (%)	80~89 (%)	90+	
	-1년	4.5	17.3	16.5	4.9	—	43.2
	1~2.9	2.5	3.7	16.9	5.4	—	28.4
	3~4.9	0.8	0.4	2.9	1.2	0.8	6.2
	5~6.9	0.4	3.7	9.1	4.1	0.4	17.7
	7+	0.4	—	2.1	1.2	—	3.7
무응답		0.8	—	—	—	—	0.8
계		9.5	25.1	47.3	16.9	1.2	100.0
응답자 수(명)							243

경기도, 1970

$\chi^2=27.155 \quad d.f=6 \quad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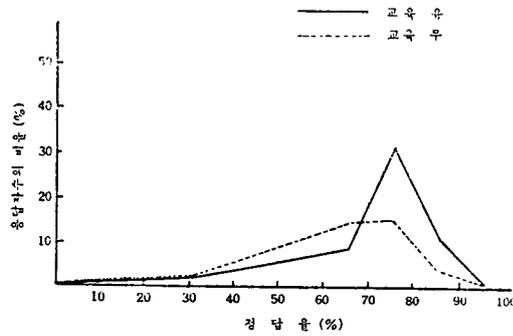
<표 21>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교육기간별 정답율

		정답율(%)					계(%)
기간		-60 (%)	60~69 (%)	70~79 (%)	80~89 (%)	90+	
	1주	3.5	7.7	21.1	8.5	—	40.9
	2주	2.1	3.5	12.7	2.8	0.7	21.8
	3주	0.7	2.1	7.0	1.4	0.7	11.9
	4주	—	1.4	6.3	1.4	—	9.2
	5주+	0.7	1.4	7.0	6.3	0.7	16.2
계		7.0	16.1	54.1	20.4	2.1	100.0
응답자 수(명)							142

경기도, 1970

$\chi^2=2.995 \quad d.f=3 \quad p>0.05$



도 4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 교육수로 유무별 정답율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현직에 만족하고 있는 요원과 불만족한 요원 사이에는 정답율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p>0.05$).

IV. 고찰

1. 일반적 특성

우리 정부에서는 1971년 2월 9일 제 3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1976년까지 이룩할 경제개발 계획 중 인구분야에 있어서는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인구증가율을 1966년의 1.9%를 1973년 이후에는 1.5%로 억제하여 총 인구를 34,345,000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계획의 성취 여부는 보건소 지도원 및 읍, 면 계몽원의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한국 가족계획사업 실적평가(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에 의하면 연간 가족계획 목표량에 대한 실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가족계획 요원의 자질문제와 요원들의 신분보장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부에서 1969년 12월 시행한 각급 가족계획 종사원의 직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빈번한 이직문제를 들고 있다.

1967년 경기도에서의 가족계획 요원의 부족은 21명이었고 1968년에는 24명, 1969년에는 25명

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가 1970년 10월 말에는 다시 14명으로 감소되었다(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면허 유무별 근무상태도 무면허자로 근무중인 요원이 46.9%로서 전국의 28.8%에 비하여 높았고 요원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도 24세 이하의 연령이 경기도에서 40%에 해당하나 전국의 경우 19%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점으로 보아 경기도에서는 24세 이하의 젊은 요원들이 현지에서 연상의 부인들께 피임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실정이었다.

가족계획 요원의 현직종사에 대한 태도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의사표시한 요원이 31% 그리고 무응답 20%로서 약 51%의 해당하는 요원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69년 보건사회부에서도 전국의 64%가 현직에 불만족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경기도의 51%도 전국의 64%에 준하는 비율이라 하겠다.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이유도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보수가 적은 것을 든 것도 이는 전국조사와 동일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들의 앞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이 되도록 속히 이직 하겠다는 요원이 69%에 달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는 무엇보다도 가족계획 요원의 신분보장, 급여개선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사회부의 가족계획사업 실천요강에 의하면(보건사회부, 1971) 보건소 지도원 및 읍, 면 계몽원의 인사 및 훈련 규정에서 가족계획의 교육 훈련사항을 규정하고 가족계획 교육은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국립보건연구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및 각 시, 도에 위임 실시되었으나 1970년 8월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설립이후 가족계획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나누어 읍, 면 계몽원의 기초반, 지도원 기초반으로 구분되고 이외에 평가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도 있다.

교육내용은 일반학, 기술학 및 기타로서 39시간 배당되고 가족계획의 개요, 가족계획의 필요성, 피임방법의 소개, 모자보건 및 기초 교양과목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평균 현직재임기간 2년에 41%가 가족계획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특히 읍, 면 계몽원은 그 과반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무면허 요원으로서 채용되어 읍, 면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성취시키는데 문제점이 된다.

가족계획의 교육을 수료한 요원에 있어서도 보다 깊고 넓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 파악의 방법과 가족계획사업 진도의 평가 방법 등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식사항 피임방법의 지식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가족계획 요원의 지식 검토는 면허 유무에 불문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의 수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 보건기관에서의 종사자들이 특히 보건간호 분야에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활동 사항이 일반화(generalized) 되어 있지 않고 특수화(Specialized)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바 가족계획 요원 임명기관에서는 요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 보건 분야의 업무활동이 일반화시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에서 또는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충분한 가족계획에 대한 교수시간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사연구는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에 대한 사항만을 선택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어떤 기술적인 방법(Technical measurement) 즉 층화평점법 또는 5단계 평점법과 같은 방법으로 척도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에 부합되는 지식측정이 요망되며 더 나아가서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가 요망된다.

V. 결 론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식과 규정,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로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현직 근무기간은 평균 2년으로서 짧고 특히 읍, 면 계몽원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층의 무자격자로서 이직율이 높았다.
2.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직업을 택하는 동기와 태도는 보건소 지도원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직업 및 배운 학문과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택하는 것에 반하여 읍, 면 계몽원은 직업의 경협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3.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가족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피임기구 및 약제의 관리 및 사무처리의 행정적 지시사항은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4. 루우프, 경구 피임제, 남자 불임수술 등의 피임작용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술시기 또는 투여시기와 시술 혹은 투여에 의한 부작용 유발사항은 잘 알고 있었으나 부작용 발생후 처치사항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는 낮았다.
5.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의 유자격자와 무자격자 간에 있어서 가족계획에 대한 행정적 지시사항, 피임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에 있어 가족계획사업 종사기간이 오랜 요원일수록 가족계획사업의 행정적 지시사항, 피임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7.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에 있어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요원은 수료하지 않은 요원보다 가족계획의 행정적 지시사항, 피임방법 및 인구분석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 이해도가 높았다. 따라서 가족계획 요원에 있어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8. 경기도 가족계획 요원에 있어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에는 담당지역의 인구, 여자인구, 가임부수 및 인구동태율 등의 인구분석학적 사항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Study on Need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Family Planning Workers in Kyonggi-Do, Korea

Lee, Kwang O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Myung H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has been intensively implemented in Korea by the national policy since 1962. However, the desired effective results were not fully obtained by many reasons such as the shortage of qualified workers, lack of eligible women's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family planning etc..

The field family planning workers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long the governmental personnel order; the senior field worker and the assistant field worker. The former is qualified licensed nurse and the latter

same as the former of a certified nurses-aid.

These family planning worker's roles are somewhat in change not only in field education, distribution of contraceptions, administrating mother's class of assistant field workers but also responsible for the senior field workers such as recording, reporting and keeping statistics.

Therefor, the desired success of family planning programming in Korea depends on family planning worker's professional abilities and activities in the field.

In aiming to study on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above two kinds of family planning work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a field survey with questionnaires done as of October, 1970 in Kyonggi-Do.

1. Working term of the family planning workers in average were less than two years. The younger the assistant Field workers were, the earlier they left job.
2. The assistant field workers selected their job in order to the superficial rather than implementing job itself.
3. Most of the workers either in the health center or in the Up-Myun had a better understanding concerning with their job; contraceptive methods,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drug keeping, and other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4. They had relatively better understanding and sufficient knowledge about contraception itself and application of it's methods and side effects in detail too, but less knowledges for the care after.
5. It was hard to Find out any differences in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demographic understanding.
6. It is fully agreed upon that the longer the worker have experienced with the program, the more skilful she applied.
7. The worker who had training whether pre-service or inservice are working more effectively than the untrained.
8. The fundamental demographic knowledge is recommended to obtain for the workers in Kyonggi-Do.

참 고 문 헌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월보, 1월호(서울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월보, 2월호(서울 : 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
- 김명호.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효과에 관한 연구", 종합의학 제10권 1호, 1965, pp.33-47.
- 김주환, 김응익. "각급 가족계획 요원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족계획년보(창간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0, pp. 58-81.
- 김의숙. "가족계획 요원의 활동지침에 관한 시안", 대한간호 10권 1호 1971, pp. 38-53.
- Demographic Division, The Population Council. A Manual for Surveys of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0.
- Manisoff, M.T. "Councelling for Family Planning, "Amer. J. Nurs., 1966, pp. 2671-2675.
- Manisoff, M.T. Family Planning-A Teaching Guide for Nurses, published by planned parenthood-world population, 1969.
- Meier, T. "Role of Hospital Nurses in Family Planning," Nursing Outlook(July, 1965), p. 86.
- 박형중. "보건요원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에 중요성과 그 방향", 인구문제논집 6호, 1968, pp. 142-165.
- 방숙, 이만갑, 양재모. "한국 농촌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연색의대는 문집 4권, 1963, pp. 77-102.
-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실천요강, 서울 : 보건사회부, 1971, pp. 9-52.
- 보건사회부. 각급 가족계획 종사원의 직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연구(서울 : 보건사회부, 1959).
- 보건사회부. 한국가족계획사업, 서울 : 1966.
- Yang, J.M.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Population Studies, XVIII-3(March, 19

- 65), p. 273.
-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간호원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활동지침. 서울: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0.
- Worth, G. et al. Korea/Taiwan 1970: Report on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s,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 No. 3 (The population council, 1971), pp. 57-59.
- 인구문제연구소. 아세아 및 중동제국의 인구사정. 서울: 1970, pp. 193~213.
- Chesterman, H. "The Public Health Nurse and Family Planning," *Nursing Outlook*(Dec., 1964), pp. 32-34.
- 최태호. "농촌부인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65.
- Tietze, C. "Modern Methods of Birth Control: An Evaluation," *Family Planning Programs* edited by Bernard Berelson, Basic Books, 1969, pp. 183-190.